

산재보험제도

● 개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 적용범위

일 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특 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 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 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 보험료율

업종별 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천분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종류		61	61	61	62	60	58	58
업종별 요율	평균	19.5	18.0	18.0	17.7	17.7	17.0	17.0
	최고	553	360	360	354	340	340	340
	최저	7	7	6	6	6	6	6
출퇴근요율		-	-	-	-	-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종류		58	58	51	45	35	28	28
업종별 요율	평균	17.0	17.0	17.0	16.5	15.0	14.3	14.3
	최고	340	340	323	281	225	185	185
	최저	7	7	7	7	6	6	6
출퇴근요율		-	-	-	1.5	1.5	1.3	1.0

● 보험료율

개별실적요율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 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 지원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www.kcomwel.or.kr